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419
----------	------------

제안년월일 : 2019년 4월 23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 계산방법에 대한 조문의 구조와 문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안 제19조제1항 본문 중 “재직기간을 말하며,”를 삭제함(안 제 19조 제1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제1항 본문 중 “재직기간을 말하며,”를 삭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8조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직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p>	<p>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8조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직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p>	<p>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8조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직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p>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복무선서)”를 “(복무 선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무선서”를 “복무 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서”를 “복무 선서”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제1항 중 “공휴일”을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제19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하고 “1년에 한함”을 “1년으로 한정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 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1조제1항 중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를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휴직 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6호 중 “때”를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 할 때

제2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제6항 본문 중 “불임치료”를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4조제13항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u>복무선서</u>를 하여야 한다.</p> <p>② <u>선서</u>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p> <p>제13조(근무시간 등)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생략)  <u>&lt;신 설&gt;</u></p>	<p>제1조(목적) ----- 「<u>지방공무원법</u>」 및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p> <p>제2조(복무 선서) ① -----          -----          -----          ----- <u>복무 선서</u>-----          -----.</p> <p>② <u>복무 선서</u>-----          -----.</p> <p>제13조(근무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전자정부법</u>」 제32조제3항-----          -----          -----          -----.</p> <p>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u></p>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u>공휴일</u> 근무를 명할 수 있다.</p> <p>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u>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u></p>	<p><u>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u></p> <p>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 ----- ----- 공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p> <p>② ----- ----- -----.</p> <p><u>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u></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175 1153 734 1556">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3월 이상 6월미만</td><td>3일</td></tr> <tr><td>6월 이상 1년 미만</td><td>6일</td></tr> <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9일</td></tr> <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12일</td></tr> <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14일</td></tr> <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7일</td></tr> <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20일</td></tr> <tr><td>6년 이상</td><td>21일</td></tr> </tbody> </table> <p>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8조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p>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p>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837 1153 1396 1512">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1개월 이상 1년 미만</td><td>11일</td></tr> <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12일</td></tr> <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14일</td></tr> <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15일</td></tr> <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7일</td></tr> <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20일</td></tr> <tr><td>6년 이상</td><td>21일</td></tr> </tbody> </table> <p>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8조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직기간, 강</p>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현행	개정안
<p>직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p> <p>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u>이 경우</u>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u>1년에 한함</u></p> <p>2.·3. (생략)</p> <p>② (생략)</p> <p>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 ③ (생략)</p> <p>④ 공무로 인하여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p> <p>1. ----- ----- . <u>다만,</u> ----- ----- ----- <u>1년으로 한정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u></p> <p>2.·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범위</u> ----- ----- ----- . ----- ----- ----- .</p>

현행	개정안														
<p>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p> <p>〈신설〉</p>	<p>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815 815 1406 1335"> <thead> <tr> <th>재직기간</th> <th>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1년 미만</td> <td></td> </tr> <tr> <td>1년 이상 2년 미만</td> <td>5일</td> </tr> <tr> <td>2년 이상 3년 미만</td> <td>6일</td> </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 <td>7일</td> </tr> <tr> <td>4년 이상</td> <td>8일</td> </tr> <tr> <td></td> <td>10일</td> </tr> </tbody> </table> <p>제20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일 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p>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5일	2년 이상 3년 미만	6일	3년 이상 4년 미만	7일	4년 이상	8일		10일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5일														
2년 이상 3년 미만	6일														
3년 이상 4년 미만	7일														
4년 이상	8일														
	10일														

현행	개정안
<p>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① <u>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lt;단서 신설&gt;</u></p>	<p><u>이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1. <u>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u></p> <p>2. <u>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u></p> <p>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① <u>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 ----- .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u></p>



현행	개정안
<p>②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p> $\frac{\text{해당연도 휴직기간(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p>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p> $\frac{\text{해당 연도 중 휴직 또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li> <li>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li> <li>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li> </ol>

현행	개정안
<p>③·④ (생략)</p> <p>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p> <p>7. ~ 10. (생략)</p> <p>〈신설〉</p>	<p><u>외 위탁교육훈련</u></p> <p>5. <u>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3조(공가)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때 및 「<u>결핵예방법</u>」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p> <p>7. ~ 10. (현행과 같음)</p> <p>11. 「<u>검역법</u>」 제5조제1항에 따른 <u>오염지역,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국무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u></p>

현행	개정안
<p>제24조(특별휴가) ① ~ ③ (생략)</p> <p>④ <u>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u>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u>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u>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⑤ (생략)</p> <p>⑥ <u>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u>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p> <p>⑦ ~ ⑩ (생략)</p> <p>⑪ <u>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u>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p>	<p><u>할 때</u></p> <p>제24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u>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 <u>난임 치료</u> ----- ----- ----- -----</p> <p>⑦ ~ ⑩ (현행과 같음)</p> <p>⑪ <u>자녀가 있는 공무원</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p>

현행	개정안
<p><u>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u></p> <p>⑬ <u>출산한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은 1일의 출산지원 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u>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u></p> <p><u>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u></p> <p><u>우</u></p> <p><u>&lt;삭 제&gt;</u></p>